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소매업자 면허 요건

담배는 무엇입니까?

담배¹는 말려 있는 모든 크기와 형태의 흡연용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 가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토바코로 제작됨
- 종이나 기타 소재의 포장지가 있음

예외: 토바코로 감싸져 있거나 주로 토바코 성분으로 제작된 포장지가 있는 제품(예: 시가)의 경우 1,000개비당 중량이 1.36kg(3파운드) 이상이면 담배가 아닙니다. 대신 해당 제품은 토바코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토바코 제품이란 무엇입니까?

"토바코 제품"²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모든 형태의 시가(작은 시가를 포함)
2. 흡연용 또는 파이프 토바코(물담배 포함), 씹는 토바코 및 코담배
3. 함량과 무관하게 인체 소비용 토바코 성분을 함유하거나, 해당 성분으로 제작되거나, 해당 성분에서 추출된 모든 제품
4. 함량과 무관하게 인체 소비용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거나, 해당 성분으로 제작되거나, 해당 성분에서 추출된 제품으로 전달 장치/시스템과 함께 또는 전달 장치/시스템 없이 판매되는 모든 제품(예: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
5. 전자담배 또는 니코틴과 함께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는 모든 장치나 전달 시스템
6.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장치의 경우, 장치 작동 시 사용되는 전자담배의 모든 구성 요소,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예: 단일 가격에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며 장치 작동에 사용되는 배터리)

주에서 최초 유통 시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토바코 물품세가 이러한 제품에 적용됩니다.³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 에서 [간행물 93](#),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es)*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연 제품으로 승인한 제품이나 기타 치료 목적(예: 니코틴 패치)의 제품은 토바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¹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30003항.

² 세입 및 조세법 30121항 및 30131.1항.

³ 세입 및 조세법 2부 13편(30001항으로 시작)

소매업자 면허 교부 목적으로 확장된 토바코 제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2016년 6월 9일부로 캘리포니아주 법령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 교부 목적으로 토바코 제품⁴의 정의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1. 인체 소비용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거나, 해당 성분으로 제작되거나, 해당 성분에서 추출된 모든 제품
2.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 액체를 전달하는 전자식 흡연 장치 (스모킹/베이핑)
3. 토바코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 부속품 또는 액세서리(별도 판매 여부와 무관)

전자담배, 무화기, 베이핑 탱크 또는 모드, 액상형 전자담배가 예시로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납세필 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담배나 기타 토바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 of 2003)⁵.

2017년 1월 1일부로 토바코 제품의 확장된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소매점에 눈에 띄게 면허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의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는 각 지점이나 자동판매기에도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요하는 지점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점 1곳마다 최초 면허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면허 갱신 수수료도 적용됩니다. 수수료 관련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에 따라 교부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타주 판매자에게 비과세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입하려면 그 전에 유통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납세필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도매업체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니코틴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 토바코 제품의 확장된 정의에 속하는 모든 제품의 유통 및 도매 판매 시에는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면허가 필요합니다.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면허의 현재 수수료율은 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⁴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2950.5 (d)항.

⁵사업 및 직업법 8.6부(22970항으로 시작).

이동 시설 판매자가 담배 및 기타 토바코 제품 판매를 위한 소매업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동 시설 위치”는 소매점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푸드트럭, 런치웨건 또는 기타 이동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 취득 자격이 없으므로 캘리포니아주의 트럭, 웨건 또는 기타 이동 시설에서 담배나 토바코 제품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소매업자의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 및 일할계산이 불가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다른 소매점을 추가할 경우 첫 번째 소매점의 소매업자 면허 취득 달부터 시작하는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추가 소매점 면허가 갱신됩니다. 면허 만료일 전 CDTFA에서 이메일 및 서류로 갱신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유지하려면 CDTFA를 통해 온라인으로 면허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갱신 신청 시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를 갱신하지 못했으나 적시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도 면허는 만료됩니다. 유효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 없이 담배 및/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신청 및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www.cdtfa.ca.gov에서 CDTFA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면허를 신청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 CDTFA 사무소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온라인 면허 신청 또는 갱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고객 서비스 센터(1-800-400-7115, TTY: 711)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는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운영됩니다.

면허 및/또는 갱신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온라인을 통해 은행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판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매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면허 교부 요건은 CDTFA에서 발급한 다른 허가증 및 면허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발급받고 매년 면허를 갱신하려면 캘리포니아주 판매 허가증을 신청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에 따라 주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취득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 판매 면허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는 지역 내 담배 소매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밀집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신청서 또는 면허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 추가 제한이 부과될 수 있는 지역 담배 면허 요건을 지역 보건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업자 면허 소지자의 책임

소매업자 면허 소지자로서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소매점에 눈에 띄게 면허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완전하고 판독 가능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송장을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면허가 교부된 각 지점에 보관합니다. 송장은 재고와 동일한 위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송장은 4년 동안 보관합니다.
- CDTFA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요청할 경우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구매 송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무장관실의 캘리포니아주 토바코 안내 리스트(이하 '디렉토리', oag.ca.gov/tobacco/directory)에 명시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된 담배 및 롤링타바코(RYO)만 구매하고 판매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CDTFA는 강사가 주도하는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www.cdtfa.c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기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담배 제조사나 브랜드 제품군을 디렉토리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경우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는 면허를 소지한 소매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소매업자는 해당 제조사 또는 브랜드 제품군이 디렉토리에서 삭제된 날부터 60일까지만 디렉토리에서 삭제된 납세필 인지가 찍힌 담배 또는 납세필 RYO를 소지, 운송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60일의 처분 기간이 경과하면 CDTFA에서 담배 및 RYO 토바코를 압수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 송장 요건. 유통업체 및/또는 도매업체에게 받은 송장은 판독 가능하며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담배나 토바코 제품을 구입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면허 번호.
- 송장에 기재된 담배나 토바코 제품과 관련하여 유통업체가 CDTFA에 납부해야 할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 금액.

참고 사항: 면허 소지 유통업체인 동시에 면허 소지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체인 경우, CDTFA에 납부해야 할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 금액을 기재하는 대신 다음 문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물품세는 본 송장의 총액에 포함됩니다.”

- 구매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의 항목별 목록. 담배는 브랜드 및 스타일 이름, 가향, 필터 및/또는 포장(해당되는 경우), 판매된 보루나 갑의 개수, 판매 가격별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토바코 제품은 브랜드, 유형(예: 파이프, 시가 또는 RYO 담배), 가향, 포장(예: 파우치, 강통 또는 상자), 판매 수량 및 판매 가격별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성함, 주소,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 번호.
-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 구입일.

상점 간 양도되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일반적으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점을 한 곳 이상 소유하며 동일한 법인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상점 간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양도 시에는 판독 가능한 양도 기록과 원본 구매 송장 사본을 양도와 연관된 각 지점에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양도 기록에는 각 상점의 주소, 구매 송장 날짜, 구매 송장 번호, 송장의 공급자 이름과 면허 번호 및 포장 유형, 가향 및/또는 스타일, 양도 수량 등 양도 품목과 관련한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행

면허증 게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각 소매점에서 면허증을 눈에 띄게 게시하지 않을 경우 발견될 때마다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록. 담배 및 토바코 제품(니코틴과 함께 판매 또는 구매할 경우 토바코 제품의 확장된 정의에 속하는 제품 포함)의 재판매 재고 관련 송장을 비롯하여 판독 가능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12달의 송장은 구매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소매점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CDTFA 직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 CDTFA 직원은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의 판매, 생산, 보관 장소 또는 불법 활동의 증거가 있는 모든 장소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30435항) 결과적으로 CDTFA 직원과 법 집행관은 소매점을 조사하여 납세필 인지가 없는 담배, 다른 주의 인지가 위조 납세필 인지가 찍힌 담배 등 모든 비과세 담배 및/또는 토바코 제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소지한 소매업자는 벌금 및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 유효한 면허 소지 및 게시를 포함하여 상기 명시된 조사 활동은 토바코 제품의 확장된 정의에 포함된 모든 제품(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CDTFA 조사 및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dtfa.ca.gov에서 **간행물 152,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Cigarette and Tobacco Product Inspections)**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 기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날짜 이후에는 판매용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 증정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소매업자는 정지 기간 동안 정지 고지문(Notice of Suspension)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매점에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소매업자는 취소일로부터 30일 동안 취소 고지문(Notice of Revocation)을 면허 취소 대상 소매점에 게시해야 합니다. 정지 또는 취소 고지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각 위반에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나 면허 취소일 이후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지한 모든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고지를 받은 후에도 판매용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계속 진열할 경우 각 위반에 \$1,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구매. 소매업자가 2003년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에 따른 면허가 없는 다른 소매업자나 판매자로부터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니코틴과 함께 구매되는 경우 토바코 제품의 확장된 정의에 속하는 제품 포함)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구매 시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이 압수될 수 있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둘다에 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면허를 확인하려면 CDTF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모바일 기기에서 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면허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판매. 판매 허가증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소매업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003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인허가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나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의 불법 판매 시 CDTFA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귀하의 모든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된 물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www.cdtfa.ca.gov

또는 CDTFA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 TTY : 7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일반적 경로(예: 관리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면 무료 전화(1-888-324-2798)로 연락해 주십시오.



참고 사항: 이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일에 유효한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과 법률 또는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결정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며 본 간행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